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. 11. 21 선고 2024가단21119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청용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

변 론 종 결 2024. 10. 24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1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하고, 개별 부동산의 표시는 '이 사건 ○부동산'이라 한다) 중 각 1/4지분에 관하여, C와 피고 사이에 2023. 12. 2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

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(1) 원고는 C을 상대방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차전1286으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. 4. 29. 위 법원으로부터 ‘C은 원고에게 32,261,951원 및 그 중 12,117,235원에 대하여 2020. 4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0. 7. 17. 확정되었다.

(2) 원고는 C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9279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. 3. 9. 위 법원으로부터 ‘C은 원고에게 18,535,881원 및 그 중 17,823,903원에 대하여 2016. 2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6. 3. 29. 확정되었다.

나.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모 D가 소유하고 있었는데, D가 2023. 11. 12. 사망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하자,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, C, E, F은 2023. 12. 21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고, 이에 피고는 2023. 12. 28. 자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(1) 이 사건 3, 4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11,000,000원, 채무자 망인,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하는 2012. 3. 2.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.

(2) 피고는 2024. 2. 5. 이 사건 3, 4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-12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,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며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.

나. 사해행위 성립 여부

(1)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(민법 제1008조),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.

(2) 을1-15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G조합, H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일 기준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병룡

별지